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발 의 자 : 정영출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영출 의원)

가.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등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 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생계비·아동교육비·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기능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0
----------	-----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일

발의자 : 정영출 의원(1명)

찬성자 : 김재진, 허홍석, 권영식, 박정자,  
윤준용, 유승용 의원(6명)

##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유형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사업(안 제6조)

-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등

라.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 안 제8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4. 27. ~ 5. 4.) :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